

광주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5623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 북구 D, E호] 사이에 체결된 2022. 12. 1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17. 5. 16.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에 기한 소외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소외회사는 2018.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4. 8. ‘C는 원고에게 35,469,902원 및 그 중 23,430,825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31062호).

나. 한편, C의 부친인 망 G이 2007. 9. 15.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피고, H, C, I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 앞으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J조합, K은행, L카드, M카드, N카드, O카드, P대부, Q 주식회사 등에 합계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각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P(이하 'P대부'라고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P대부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채권자인 P대부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원상회복이 마쳐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혜선

별지